

##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

### 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6. 4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6. 4. 12

다. 상 정 일 자 : 2006. 4. 18

(제1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### 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총무위원회 문정조 의원

나. 제안사유

- 지방자치제도와 군정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화순군 의원동지회의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(안 제1조)
- 사업과 보조금의 지원(안 제2조)
- 사업계획서의 제출승인(안 제3조)
- 결산보고(안 제4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용태)

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제도 및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화순군 의원동지회의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예산이 수반된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.

### 4. 질의 답변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 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 가결”

7. 붙임 :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군정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화순군 의원동지회(이하 "의원동지회"라 한다)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과 보조금의 지원) ① 의원동지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방자치제도 및 군정 발전에 기여 공헌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건의
2. 사회복지문제 연구 및 홍보
3. 자치단체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
4. 회보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간행물 발간
5.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원동지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화순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의원동지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3조(사업계획서의 제출·승인) 의원동지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한 후 그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4조(결산보고 등) 의원동지회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·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적용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